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유 료 도 로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유공자가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1급 내지 7급의”를 “1급부터 7급까지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 중 “소유하는 차량으로서”를 각각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29년 06월 30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고, 당해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 가구(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1호 나목 중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를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로 하고, 라목 중 “1급 내지 5급의”를 “1급부터 5급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6급 내지 14급의”를 “6급부터 14급까지의”로 하고, 다목 중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항제11호의 차량

제15조의3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와 모, 19세 미만 자녀 모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로 다자녀 가구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구분란의 기재사항 제15조의3제2호 라목 중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시설대여 또는 임차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차량의 차종, 승차정원, 소유자 성명(법인일 경우 명칭) 및 생년월일(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에 포함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생략)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현행과 같음)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1의4. ----- ----- ----- ----- ----- ----- <u>-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서</u>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u>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u>)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u>소유하는 차</u>	2. ----- ----- ----- <u>-- 1급부터 7급까지의</u> ----- ----- ----- ----- <u>소유하거나</u>

rang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
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
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
용하는 차량으로서 -----

2의2. -----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
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
용하는 차량으로서-----

3. -----

-----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
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으로서 -----

4. _____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 10. (생략)

<신 설>

---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
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으로서 -----

5. ~ 10. (현행과 같음)

11. 2029년 06월 30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하 같다) 3명 이상과 함께 등
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소
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
차하고, 당해 부 또는 모가 승
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 가구(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 또
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
는 차량

③ (현행과 같음)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생략)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차량

다. -----
----- 1급부터 5급까지의 -----

③ (생략)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생략)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
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
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
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

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
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
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생략)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
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
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
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
하는 차량

라. -----

----- 1급

부터 5급까지의 -----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생략)

나. -----

----- 6급

부터 14급까지의 -----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 나. (생략)

<신설>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
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 마. (생략)

<신설>

바. (생략)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
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
음 각 목의 정보

가. ~ 다. (생략)

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1항제11호의 차량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와 모, 19세 미만 자녀 모두
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
계.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의 관계로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확인이 불가
능할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
관계증명서상 구분란의 기재
사항

사. (현행 바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u>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u> 마. ~ 바. (생략) <u><신설></u> <u>사.</u> (생략)	라. ----- ----- -----<u>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시설대여 또는 임차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에 한한다)</u> 마. ~ 바. (현행과 같음) <u>사.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차량의 차종, 승차정원, 소유자 성명(법인일 경우 명칭) 및 생년월일(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 한한다)</u> <u>아.</u> (현행 사목과 같음)
--	--